

김해동네고양이협회

📷 dong\_nae\_cat

▶ 김해동네고양이협회

🌐 <https://m.cafe.naver.com/kimhaeanimalcare>

# 길고양이와 공존하는 김해

길고양이 보호 조례 제·개정을 위한 공론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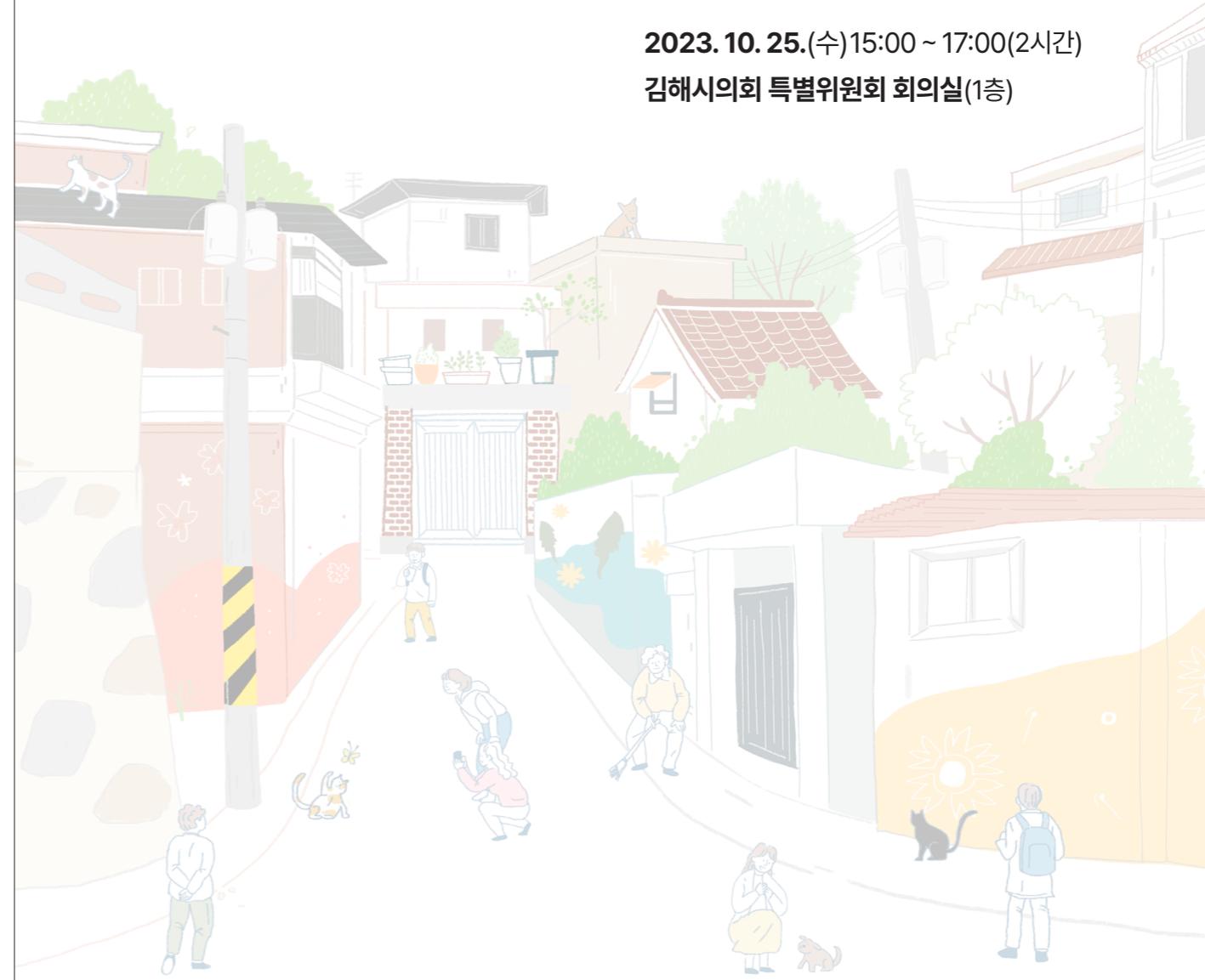
김해동네고양이협회

# 길고양이와 공존하는 김해

길고양이 보호 조례 제·개정을 위한 공론장

2023. 10. 25.(수) 15:00 ~ 17:00(2시간)

김해시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1층)



김해동네고양이협회

## 『길고양이와 공존하는 김해』를 위한 공론장 개최

김해시 동물보호 조례 개정과 길고양이보호 관련하여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해당 의제에 대하여 공감과 관심을 확대하기 위하여 공론장 개최

### 1. 공론장 개요

**행사명** 『길고양이와 공존하는 김해』를 위한 공론장 개최  
**일시** 2023. 10. 25.(수) 15:00 ~ 17:00(2시간)  
**장소** 김해시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1층)  
**주최/주관** 김해문화재단, 김해문화도시센터, 김해동네고양이협회  
**협조** 김해시의회  
**주요내용** 내빈소개, 기조연설, 주제발표(찬성/반대), 질의응답, 폐회

\* 위 공론장은 2023년 문화도시조성사업-도시문화실현실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김해문화도시센터의 활동비 지원을 받아 진행됩니다.

### 2. 세부 계획

구분	세부내용
개회식	국민의례, 내빈소개, 인사말씀, 사진촬영 - 국민의례 : 약식(국기에 대한 맹세(녹음반주) 외 생략) - 내빈소개 및 인사말씀
기조연설	송유인 김해시의원(좌장)
발제	① 김진일 김해시의원 「김해시 동물보호관련 조례 현황 및 필요성」 ② 김하연 작가 「찬성 : 타 지역 조례와 비교하여 김해시 길고양이보호조례 제·개정을 위한 필요성」 ③ 노순덕 전 4급 공무원 「반대 : 길고양이 보호 조례제정이 답인가?」
참석자 질의응답	동물보호조례개정을 위한 필요성
총평	송유인 김해시의원(좌장)
폐회	이한준(진행)

### 3. 시간 계획

순서	시간	내용	비고
등록	14:30 ~ 15:00	참여자 등록	김해동네고양이협회
개회	15:00 ~ 15:03	개회선언 및 국민의례	진행자 이한준
내빈소개	15:03 ~ 15:10	내빈소개 및 인사말씀	
발제	15:10 ~ 15:25	동물보호조례개정을 위한 필요성	김진일 김해시의원
	15:25 ~ 15:40	조례 개정이 답인가?	노순덕 전 4급 공무원
	15:40 ~ 16:00	타지역 조례와 비교하여 김해시 길고양이 보호 조례 제·개정을 위한 필요성	비영리사회적협동조합 관악구길고양이보호협회 이사, 김하연 작가
참석자 질의응답	16:00 ~ 16:40	참석자 질의응답	김진일 김해시의원 노순덕 전 4급 공무원 김하연 작가
총평	16:40 ~ 16:55	총평	(좌장) 송유인 김해시의원
폐회	16:55 ~ 17:00	폐회 및 마무리 정리	진행자 이한준

\* 참석자 등 질의응답 여부에 따라 최종 계획된 시간이 변경될 수 있음.



**기조연설** \_  
김해시의회 송유인 의원

**발표** \_  
해외의 길고양이 보호 정책 관련 사례 고찰  
김해시의원 김진일



안녕하세요. 김해시의회 송유인 의원입니다.

오늘 공론의 장은 『길고양이와 공존하는 김해』를 주제로 공생 방법을 모색하고자 마련된 자리입니다. 귀한 자리에 좌장을 맡게 되어 이 자리를 빌려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 2021년 10월, 법무부는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동물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고자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습니다. 이는 동물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 및 인식이 달라진 시대상을 반영한 시도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길고양이’ 정의에서도 나타나 있습니다. 1970년대부터 불리던 ‘도둑고양이’ 단어가 부정적 의미로 인해 2000년대부터는 ‘길고양이’로 대체되어 불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마하트마 간디의 “한 나라의 위대함과 도덕적 진보는 그 나라에서 동물이 받는 대우로 가늠할 수 있다”라는 말처럼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기 위해서 인식개선과 정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에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보시기에 여전히 부족하고 아쉬운 점이 있으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사실 법과 조례는 동물보호를 위한 공감대에서 시작해 제정되고, 개정되었으나, 관계단체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다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흔히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는 것과 주지 않아야 된다는 주민들간의 다툼부터 고양이 급식소 설치 및 중성화 수술(TNR) 사업 실효성을 둔 다른 상반된 민원까지 시민들의 의견이 온전히 합치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공론장에서 이러한 다양한 의견과 관점을 나누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이를 위해 상호존중을 지키며 필요한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활발한 논의와 의견 개진을 부탁드립니다.

의회에서도 이 자리에서 나온 여러 문제의식과 의견들을 반영해 사회적 흐름에 맞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방법을 모색하고 노력을 기울이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해외의 길고양이 보호 정책 관련 사례 고찰

경상남도 김해시의회

김해시의원 김진일

## I. 머리말

법령 및 고시에서는 길고양이를 어떻게 정의하나?

고양이 중성화사업 실시 요령(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6-17호)

제3조(중성화)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스스로 살아가는 고양이(이하 '길고양이'라 한다) 개체 수 조절을 위해 거세 불임 등을 통해 생식능력을 제거하는 조치를 말한다.

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길고양이'란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를 말한다.

## I. 머리말

길고양이?

도둑고양이?



2021년 2분기부터 '길고양이'는 '주택가 따위에서 주인 없이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라는 뜻의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

'도둑고양이'는 '길고양이를 낚잡아 이르는 말'로 의미가 격하 됨.

## II. 해외사례 일본 : 유기묘 카페



출처: <https://blog.naver.com/so1836/222506743646>

## II. 해외사례 일본 : 고양이 섬



출처: <https://blog.naver.com/cocogus/223237697275>

## II. 해외사례 터키 : 유기묘의 천국



출처: <https://cafe.naver.com/dieselmania/37281927>

## II. 해외사례 터키 : 유기묘의 천국



출처: <http://web.humoruniv.com>

## II. 해외사례 러시아 : '풍요, 수호' 고양이의 상징



출처: 1) <https://ko.vision1cyclings.com/> 2) <https://brunch.co.kr/@youngstrana/122> 3) [www.theartnewspaper.ru](http://www.theartnewspaper.ru)  
4) 언론기사, 이투데이, 2012.03.15

## II. 해외사례 독일 : 돌동스플리히트

그런데 독일 민법906조(§ 906 BGB) 물건·소유권에 대한 내용에 **관용의 의무 (Duldungspflicht, 돌동스플리히트)**라는 사항이 있어요. 이 조항은 반려동물이 집에만 속한 동물인 아니며 밖에 나갈 수 있다는 걸 인정하고, 이를 관용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해요.

관용의 의무에 의하면 **고양이가 이웃의 정원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고양이가 이웃의 정원을 화장실로 자주 이용하거나, 흙을 파헤치거나, 또는 정원 연못의 물고기를 잡아먹었다면 얘기가 달라져요. 이는 실제적으로 피해를 입힌 것이니 이를 관용으로 이해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고양이가 차에 흠집을 내는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고양이는 데워진 자동차 보닛이나 차 지붕에 앉아있는 것을 좋아하죠. 고양이가 차 위로 오르내리는 과정에서 차에 흠집을 낼 수도 있어요. 하지만 피해 보상을 위해서는 이웃의 반려묘가 피해를 입혔다고 증명을 해야만 해요.

반려묘가 외출을 하면 예상치 못한 사고나 잃어버릴 위험이 더 커지는데요. 관할 지역에 의무로 등록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반려견과 달리 반려묘 등록은 필수가 아니기 때문에 등록하지 않은 고양이는 주인을 찾기가 어려워요. 그렇기에 많은 반려묘 주인들은 칩삽입과 동물등록을 자발적으로 하곤 해요. 고양이를 목덜미나 어깨 뒤쪽에 50유로(약 6만 5,000원) 정도 비용이 드는 칩을 삽입하고, '타소(TASSO)' 나 '핀덱스(FINDEFIX)' 등의 동물보호단체에 온라인이나 편지로 반려묘와 반려인의 정보를 함께 등록해요. 그러면 동물병원이나 동물보호소에서 유기동물을 발견했을 때 등록번호로 보호자를 확인하고 연락을 취할 수 있어요.

출처: 네이버 포스트(동그람이)내용 중 일부 발췌

## II. 해외사례 인도 : 신생아 공격

### Cat kills 45-day-old child in Chakeri

TNN / Updated: Nov 17, 2016, 22:55 IST

Kanpur: In a bizarre incident, a 45-day-old baby girl was attacked and **killed** by a **cat** in Shiv Katra locality under the limits of **Chakeri** police station here on Thursday while her mother was busy attending household chores.

The police said that the incident took place in afternoon hours on Thursday when Shashi, wife of Dharpal, a private electrician, was attending routine work while her daughter was sleeping in courtyard of the house.

출처: 언론기사, THE TIMES OF INDIA, 2016.11.17.

## II. 해외사례 뉴질랜드 : 벌금 \$1,500

### Cats in New Zealand could face similar harsh Australian rules if they don't stop killing wildlife

21/04/2022 The Project



Watch: Could New Zealand follow in the footsteps of Australia to get cats banned from roaming outside? Credits: Video: The Project Photo: Getty Images

출처: 언론기사, Newshub, 2022.04.21.

Cats in New Zealand are notorious for killing native wildlife and people are sick of it.

In New Zealand, we may be sitting on our paws about this, but over in Australia, there is a big move to keep the cats away so the birds can play.

Across the ditch, there is a law where cats need to stay on a leash or be kept indoors rather than roaming free.

From July, cats in Canberra will have to be kept indoors and cat owners can be fined up to \$1500 if their feline friends are roaming freely.

The Opportunites Party leader Gareth Morgan reckons they are not feeding on native birds for consumption.

"It's got nothing to do with hunger, they just love killing things."

## II. 해외사례 아랍에미리트 : 고급 커뮤니티 자체 벌금

### Residents of Dubai community to face Dh500 fine if caught feeding stray cats

Tenants and homeowners in The Lakes, The Springs and The Meadows were warned this week



출처: 언론기사, thenationalnews, 2020.09.10.

Residents of a luxury community in Dubai received a notice warning that fines will be issued to those found feeding stray cats in the neighbourhood.

Tenants and homeowners in Dubai's Emirates Living, which includes Emirates Hills, The Springs, The Meadows and The Lakes, were told that leaving out food for stray animals was not permitted.

In a notice to residents, Emaar, the developer, said those caught breaking the rules would be fined Dh500 - as per Dubai Municipality guidelines - and could be referred to the authorities for further ac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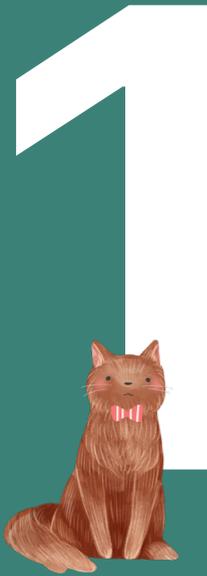
The community management team said the warning was issued in the "interest of health and safety of Emirates Living".



Stray cats from adjacent areas are attracted to the food, which can result in noisy territorial disputes and fights

In the same email, a circular from Dubai Municipality was attached that stated "feeding of birds such as crows and pigeons and stray animals such as cats and dogs" was prohibited throughout the emirate.





# 1안 김해시 길고양이보호 조례안



## 1. 제정이유

김해시 관내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길고양이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도모하고 길고양이의 개체수를 적절하게 관리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과 길고양이의 조화로운 공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제1조(목적)** 길고양이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도모하고 길고양이의 개체수를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김해시민과 길고양이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1. "길고양이"란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를 말한다.
2. "중성화"한 길고양이 개체 수 조절을 위해 거세·불임 등을 통해 생식능력을 제거하는 조치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등)

- 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길고양이가 김해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과 공존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시민은 제1항에 따른 김해시 정책에 적극 협력하고, 길고양이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길고양이 보호·관리 계획)

-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길고양이 보호·관리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1) 길고양이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2) 길고양이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
  - 3) 길고양이 급식 및 시설에 관한 사항
  - 4)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길고양이 보호, 관리를 위하여 길고양이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

- ① 길고양이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김해시 길고양이보호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김해시 동물보호 조례」제5조에 따른 김해시 동물복지위원회로 같음한다.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1) 길고양이 보호. 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2) 길고양이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 3)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의 방법, 기준, 절차 등에 관한 사항
  - 4) 길고양이 급식 및 시설 설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5) 길고양이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길고양이 보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길고양이의 관리 등)**

- ① 시장은 길고양이의 적정 개체 수 관리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중성화 수술, 치료목적의 구조,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길고양이 포획이 이루어 지고 불법적인 포획과 도살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자립할 수 없는 새끼 고양이 등에 대해서는 「동물보호센터 운영 지침」 제3조에 따라 특별한 치료와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 시장은 도심 정비구역 내 길고양이보호·조치를 위해 생태이동통로를 설치할 수 있으며, 중성화 후 「고양이 중성화 사업 실시 요령」에 따라 방사하되 안전한 이주방사를 위한 격리 공간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⑤ 그 밖에 길고양이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에 관해서는 시장이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 등을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7조(길고양이의 중성화)**

- ① 시장은 길고양이의 개체수 조절을 위하여 길고양이를 포획해서 중성화한 후 재방사하는 사업(이하 "중성화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포획한 장소에 방사한 후 학대가 재발하거나 생존에 지장이 있는 변화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외의 다른 장소에 방사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중성화 업무를 이와 관련하여 역량을 갖춘 동물병원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김해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길고양이를 포획하고 재방사하는 업무를 이와 관련하여 역량을 갖춘 동물보호 단체나 민간사업자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규정을 따른다.
- ④ 그 밖에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양이 중성화사업 실시 요령」 및 시장이 정한 지침을 따른다.

**제8조(길고양이 공공급식소 설치 등)**

- ① 시장은 사람과 동물이 함께 공존하는 지역사회를 위해 관공서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의 생활권공원 중 소공원과 근린공원에 길고양이 공공급식소를 설치 및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제9조(교육 및 홍보)**

- ① 시장은 시민에게 길고양이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돕기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길고양이 특성에 관한 사항
  - 2) 길고양이 보호 및 관리 필요성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길고양이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2안

김해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와 타지역 비교



광역 및 특별지자체 동물 조례 현황

2023.07.24 현재

조례 ×	경상남도	19.05	경상북도	19.10	광주시	19.05	길고양이 공공급식소 O
	충청남도	20.04	인천시	22.02	부산시	22.10	
	울산시	21.05	대구시	23.04	세종시	22.10	
	전라남도	21.12			서울시	23.04	
	전라북도	22.10			경기도	23.04	
	대전시	23.04					
	제주도	23.05					
	강원도	23.06					
	충청북도	23.07					
		조례 O 길고양이 X		길고양이 조항 O 급식소 X		길고양이 급식소 조항 O 공공급식소 X	

서울특별시 동물 조례 현황

2023.07.24 현재

조례 ×	중구	22.11	성동구	20.10	동대문구	20.01	종량구	21.07
			종로구	20.12	강서구	21.07	마포구	22.10
			도봉구	21.04	서초구	21.10	강동구	22.12
			노원구	21.09	송파구	21.11	강북구	22.12
			용산구	22.12	서대문구	21.12	동작구	23.03
			광진구	23.06	강남구	23.04	양천구	23.07
			성북구	23.06	금천구	23.04	관악구	23.07
			영등포구	23.07	은평구	23.05		
					구로구	23.06		
		조례 O 길고양이 X		길고양이 조항 O 급식소 X		길고양이 급식소 조항 O 공공급식소 X		

### 부산광역시 동물 조례 현황

2023.07.24 현재

서구	금정구 18.05 동구 19.06 중구 20.02 사하구 21.09 영도구 21.09 동래구 21.08	기장군 19.03 수영구 20.09 연제구 21.04 강서구 22.12 부산진구 22.12 사상구 23.06 남구 23.06	북구 20.12 해운대구 23.06	
조례 x	조례 O 길고양이 X	길고양이 조항 O 급식소 X	길고양이 급식소 조항 O 공공급식소 X	길고양이 공공급식소 O

### 광주광역시 동물 조례 현황

2023.07.24 현재

	남구 18.04 광산구 19.05	서구 21.02 동구 22.11	북구 20.07	
조례 x	조례 O 길고양이 X	길고양이 조항 O 급식소 X	길고양이 급식소 조항 O 공공급식소 X	길고양이 공공급식소 O

### 인천광역시 동물 조례 현황

2023.07.24 현재

옹진군 강화군 남동구	계양구 19.11 서구 20.03 부평구 21.04 동구 23.07	미추홀구 18.07	연수구 23.04	중구 23.07
조례 x	조례 O 길고양이 X	길고양이 조항 O 급식소 X	길고양이 급식소 조항 O 공공급식소 X	길고양이 공공급식소 O

### 대전광역시 동물 조례 현황

2023.07.24 현재

	대덕구 19.05 중구 21.12 동구 22.09 서구 22.12	유성구 21.11 동구 22.11		
조례 x	조례 O 길고양이 X	길고양이 조항 O 급식소 X	길고양이 급식소 조항 O 공공급식소 X	길고양이 공공급식소 O

### 대구광역시 동물 조례 현황

2023.07.24 현재

군위군	북구 21.09		서구 20.03 동구 21.03 달성군 21.09 중구 21.11 남구 22.06 달서구 22.09 수성구 23.04	
조례 x	조례 O 길고양이 X	길고양이 조항 O 급식소 X	길고양이 급식소 조항 O 공공급식소 X	길고양이 공공급식소 O

### 울산광역시 동물 조례 현황

2023.07.24 현재

북구	중구 21.09 동구 21.12 남구 22.07	울주군 17.11		
조례 x	조례 O 길고양이 X	길고양이 조항 O 급식소 X	길고양이 급식소 조항 O 공공급식소 X	길고양이 공공급식소 O

### 경기도 동물 조례 현황

2023.07.24 현재

이천시 안성시	하남시 15.10 포천시 16.03 의왕시 19.05 양평군 20.11 여주시 21.04 수원시 21.07 양주시 22.11 동두천시 23.04	연천군 19.04 안양시 20.07 광주시 21.07 성남시 23.02	평택시 19.06 용인시 19.10 김포시 21.05 군포시 21.07 의정부시 22.02 오산시 22.09 광명시 22.11 파주시 23.04 구리시 23.05 부천시 23.05 과천시 23.06 고양시 23.05	화성시 20.11 안산시 20.12 시흥시 21.10 남양주시 21.10 가평군 22.12
조례 x	조례 O 길고양이 X	길고양이 조항 O 급식소 X	길고양이 급식소 조항 O 공공급식소 X	길고양이 공공급식소 O

### 충청남도 동물 조례 현황

2023.07.24 현재

예산군 서천군 태안군 부여군 금산군 청양군	아산시 22.09 계룡시 22.12	당진시 20.10 보령시 21.03 서산시 21.03 공주시 23.06	천안시 20.09 논산시 22.04 홍성군 22.12	
조례 x	조례 O 길고양이 X	길고양이 조항 O 급식소 X	길고양이 급식소 조항 O 공공급식소 X	길고양이 공공급식소 O

### 충청북도 동물 조례 현황

2023.07.24 현재

청주시 보은군 영동군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제천시 20.07 옥천군 21.06	음성군 20.05 담양군 22.04		충주시 22.03
조례 x	조례 O 길고양이 X	길고양이 조항 O 급식소 X	길고양이 급식소 조항 O 공공급식소 X	길고양이 공공급식소 O

### 경상남도 동물 조례 현황

2023.07.24 현재

거창군 합천군 의령군 창녕군	거제시 16.11 고성군 20.12 산청군 21.03 김해시 21.10 양산시 21.12 통영시 22.12 함안군 22.12 남해군 23.03 하동군 23.04	사천시 19.03 밀양시 21.05 함양군 22.08 창원시 22.10	진주시 23.06	
조례 x	조례 O 길고양이 X	길고양이 조항 O 급식소 X	길고양이 급식소 조항 O 공공급식소 X	길고양이 공공급식소 O

### 경상북도 동물 조례 현황

2023.07.24 현재

김천시 영주시 영천시 상주시 경산시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 예천군 울진군 울릉군	포항시 19.09 봉화군 20.07 안동시 23.04	경주시 22.03 문경시 22.11 구미시 23.04	
조례 x	조례 O 길고양이 X	조례 O 급식소 X	길고양이 조항 O 급식소 X	길고양이 급식소 조항 O 공공급식소 X

## 전라남도 동물 조례 현황

2023.07.24 현재

영암군 함평군 무안군 신안군 진도군 보성군 곡성군 영암군	구례군 10.12 고흥군 15.11 완도군 18.02 장흥군 18.10 해남군 18.12 여수시 21.05 광양시 23.02	강진군 17.10 장성군 21.06 담양군 22.04 화순군 22.12 나주시 23.05	목포시 22.10 순천시 22.12	
조례 ×	조례 O 길고양이 X	길고양이 조항 O 급식소 X	길고양이 급식소 조항 O 공공급식소 X	길고양이 공공급식소 O

## 전라북도 동물 조례 현황

2023.07.24 현재

무주군 장수군 순창군 정읍시 김제시 부안군 고창군		익산시 20.01 남원시 21.03 임실군 23.02	전주시 19.09 진안군 20.06 군산시 20.09 완주군 21.12	
조례 ×	조례 O 길고양이 X	길고양이 조항 O 급식소 X	길고양이 급식소 조항 O 공공급식소 X	길고양이 공공급식소 O

## 강원도 동물 조례 현황

2023.07.24 현재

춘천시 강릉시 삼척시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철원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태백시 19.09 원주시 20.01 화천군 23.06 양양군 23.07	동해시 23.06 속초시 26.06	
조례 ×	조례 O 길고양이 X	길고양이 조항 O 급식소 X	길고양이 급식소 조항 O 공공급식소 X	길고양이 공공급식소 O

## 김해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 제9조(동물의 구조·보호 등)

- ④ 시장은 법 제14조제4항 및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도심지나 주택가 등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스스로 살아가는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창원시 동물보호센터 운영 및 반려·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

### 제2조(정의)

11. “길고양이”란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를 말한다.

### 제21조(길고양이 관리 등)

- ① 시장은 길고양이의 적정 개체 수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② 길고양이를 포획하여 중성화 수술을 한 경우에는 포획장소에 방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③ 시장은 중성화 수술, 치료목적의 구조,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길고양이 포획이 이루어져야 하고 불법적인 포획과 도살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실시해야 한다.
- ④ 시장은 길고양이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해야 한다.
- 1) 다치거나 3개월 미만의 길고양이에 관한 사항
  - 2)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
- ⑤ 시장은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동물보호센터 또는 「수의사법」 제 17조에 따라 개설된 동물병원, 같은 법 제23조 및 제25조에 따른 대한 수의사회 또는 그 지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포획, 방사 사업은 동물보호단체, 민간사업자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⑥ 시장은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후 동물보호시스템에 등록, 관리해야 한다.
- ⑦ 시장은 재건축, 재개발 지역 길고양이 보호를 위한 이주방사 계획을 지원할 수 있다.
- ⑧ 시장은 길고양이 보호를 위하여 동물보호단체 및 동물활동가들과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간담회 등을 통하여 소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진주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 제20조(길고양이의 관리 등)

- ① 시장은 길고양이 적정 개체 수 관리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길고양이 급식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길고양이 급식소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영 제6조에 해당하는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③ 시장은 길고양이의 개체 수 조절을 위해 동물병원 등을 지정하여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을 하게 할 수 있으며, 포획, 방사 사업은 동물보호단체, 민간사업자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부산광역시 기장군 동물보호 및 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2조(정의)

- 2. “길고양이”한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며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를 말한다.

### 제5조(사업 추진 지원)

- 4. 길고양이 개체 수 조절 및 보호를 위한 사업

## 부산광역시 사상구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관한 조례

### 제2조(정의)

- 2. “길고양이”한 도심지나 주택가 따위에서 소유자등 없이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를 말한다.

### 제11조(길고양이의 관리 등)

- ① 구청장은 길고양이의 적정개체 수 관리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구청장은 길고양이를 포획하는 경우에는 중성화하여 포획장소에 방사할 수 있다.
- ③ 구청장은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을 동물병원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세종특별자치시 동물보호 조례

### 제2조(정의)

- 3. “길고양이”한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하는 고양이를 말한다.  
<신설,2022.12.20.>

### 제8조의2(길고양이의 관리 등)

- ① 시장은 길고양이의 적정 개체 수 유지를 위하여 관리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동물병원 등을 지정하여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대행하게 할 수 있고, 수술을 위하여 길고양이를 포획하는 경우에는 중성화하여 포획장소에 방사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길고양이 관리와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생활권 공원 중 소공원 및 근린공원에 급식소를 설치할 수 있다.

##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관한 조례

### 제18조(길고양이의 관리)

- ① 구청장은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스럽게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이하 길고양이라 한다)의 적정 개체 수 유지를 위하여 중성화 사업 등 관리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구청장은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시행을 위해 길고양이를 포획한 경우에는 중성화하여 포획장소에 방사해야 한다. 다만, 길고양이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다른 장소를 정하여 방사할 수 있다.
- ③ 청장은 [수의사법]제17조 에 따라 개설된 동물병원, 같은 법 제23조 및 제25조에 따른 대한수의사회 또는 그 지부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을 하게 할 수 있으며, 포획, 방사 사업의 경우에는 동물보호단체, 민간사업자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④ 구청장은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지역사회를 위하여 길고양이 급식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 ⑤ 구청장은 길고양이 급식소 관리, 운영을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비용을 지원 할 수 있다.
- ⑥ 길고양이 포획, 방사, 중성화 수술을 시행하는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고양이 중성화사업 실시요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동물보호단체, 민간사업자 등 수탁자에게 중성화사업에 대해 교육, 홍보 할 수 있다.

## 천안시 동물보호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 제2조(정의)

4. “길고양이”란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를 말한다.

### 제4장 동물생명존중

#### 제22조(길고양이의 관리등)

- ① 시장은 길고양이의 적정 개체 수 관리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길고양이 개체 수 조절을 위해 중성화한 경우에는 포획한 장소에 방사하여야 한다. 다만, 포획한 장소에 방사한 후 학대가 재발하거나 생존에 지장이 있는 변화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외 다른 장소에 방사할 수 있다.
- ③ 시장은 중성화 수술, 치료목적의 구조,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길고양이 포획이 이루어지고 불법적인 포획과 도살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④ 시장은 자립할 수 없는 새끼 고양이 등에 대해서는 특별한 치료와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⑤ 그 밖에 길고양이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에 관해서는, 시장이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 등을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 제23조(길고양이 급식소 운영,관리등)

- ① 시장은 사람과 동물이 함께 공존하는 지역사회를 위해 길고양이 공공 급식소를 설치 관리. 운영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길고양이 공공 급식소를 설치하고 관리. 운영하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강동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

### 제2조(정의)

6. “길고양이”란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를 말한다.

### 제20조(길고양이의 관리 등)

- ① 구청장은 길고양이의 적정 개체 수 관리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길고양이를 포획하는 경우에는 중성화하여 포획장소에 방사할 수 있다.
- ③ 구청장은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동물보호센터 또는 동물병원에 위탁할 수 있다.

### 제21조(길고양이 급식소 운영, 관리)

- ① 구청장은 사람과 동물이 함께 공존하는 지역사회를 위해 길고양이 공공 급식소를 설치 관리, 운영할 수 있다.
- ② 구청장은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길고양이 공공 급식소를 설치 관리. 운영을 민간 단체 등에 위탁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비용을 지원 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관악구 동물보호 조례

### 제2조(정의)

8. “길고양이”란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하는 고양이를 말한다.

### 제4조(동물복지시행계획의 수립)

4. 길고양이 개체 수 감소 및 구민갈등 해소에 관한 사항

### 제19조(길고양이의 관리 등)

- ① 구청장은 길고양이의 적정 개체 수 관리를 위하여 계획수립 등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피학대 길고양이에 관한 사항
  - 2) 임신 중이거나 월령 3개월 미만 길고양이에 관한 사항
  - 3)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
- ③ 구청장은 길고양이를 중성화의 목적으로 포획한 경우에는 중성화하여 포획장소에 방사할 수 있다.
- ④ 구청장은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을 동물보호센터 또는 동물병원에 위탁할 수 있다.

### 제20조(길고양이 공공 급식소 및 화장실 등의 설치,운영)

구청장은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지역사회를 위해 길고양이 공공 급식소 및 화장실 등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 3안 김해시 동물보호조례에 정의부분에 첨가



1. "반려동물"이란 인간과 정서적으로 교감하며 가까이 두고 기르는 개, 고양이, 토끼, 새 등의 동물을 말한다.
2. "반려인등"이란 반려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반려동물의 사육·관리·보호하는 자를 말한다.
3. "비반려인"이란 반려동물을 기르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
4. "유실·유기동물"이란 도로 및 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반려인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버려진 동물을 말한다.
5. "반려동물 보호"란 인간이 반려동물에게 끼치는 불필요한 고통이나 스트레스 등을 최소화하며, 반려동물의 행복을 실현하는 것을 말한다.
6. "문화조성"이란 가족 구성원이자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반려동물이 인간과 정서적으로 교감함을 인지하고, 반려인등 및 비반려인과 상호 대등한 관계를 형성하여 공존하기 위한 문화 일체를 말한다.

#### 제15조(동물복지시설 설치·운영 시행계획 등)

시장은 반려동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 완화 및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 확산을 위해 반려견 놀이터, 반려동물 지원센터 등 동물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1.10.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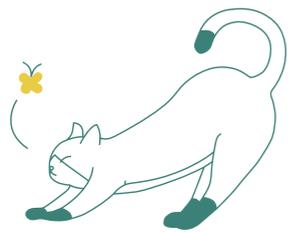
1.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반려동물 보호 및 문화조성을 위한 연도별 목표에 관한 사항
  - 2) 반려동물 보호 및 문화조성을 위한 세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 3)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 기본현황에 관한 사항
  - 4) 「김해시 반려동물 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반려동물 테마파크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 조례 신설 필요
  - 5) 반려동물 놀이터, 반려동물 입양센터 조성 등 문화조성 및 시설 확충에 관한 사항[길고양이 또는 (입양되지 않는)유기고양이를 고양이 카페의 주인공으로 활용]
  - 6)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 보호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 7) 반려동물 보호 및 문화조성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 8) 반려동물 보호 및 문화조성을 위한 협력체계에 관한 사항
  - 9) 반려동물 보호 및 문화조성을 위한 자원 확보 및 운용에 관한 사항
  - 10) 그 밖에 반려동물 보호 및 문화조성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길고양이와 공존하는 김해

길고양이 보호 조례 제·개정을 위한 공론장

일시 2023. 10. 25.(수) 15:00 ~ 17:00(2시간)

장소 김해시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1층)



김해동네고양이협회

 dong\_nae\_cat

 김해동네고양이협회

 <https://m.cafe.naver.com/kimhaeanimalcare>